

2020년도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공고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년 4월 24일

화학물질안전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총 12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 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101	방호서기	1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적용	화학물질안전원 기획운영과 (대전광역시)
201	전문경력관나군	1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적용	화학물질안전원 기획운영과 (대전광역시)
202	전문경력관나군	1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적용	화학물질안전원 기획운영과 (대전광역시)
301	전문경력관나군	1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적용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대전광역시)
302	전문경력관나군	1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적용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대전광역시)
401	공업연구사(기계)	1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적용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총괄훈련과 (대전광역시)
402	공업연구사(화공)	1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적용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대전광역시)
403	공업연구사(화학)	1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적용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대전광역시)
404	공업연구사(화공)	1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적용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대전광역시)
501	환경연구사(환경)	1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적용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총괄훈련과 (대전광역시)
502	환경연구사(환경)	1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적용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대전광역시)
601	환경연구사(환경)	1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적용	익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전라북도 익산시)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하며, 화학물질안전원의 근무지는 2020년 10월 이후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로 이전 예정

2. 주요 업무 분야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101	방호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안전원 청사방호 및 출입자 관리 · 기관의 안전(소방 포함) 및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
201	전문경력관나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설비 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 업무 · 법정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보조원 업무
202	전문경력관나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일러 운영 등 각종 기계시설물 유지관리 · 도시가스 관리, 기계설비 설계, 감독, 검사 등
301	전문경력관나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외영향평가 심사 시스템 구축 운영 · 장외영향평가 심사에 따른 민원 전산화 일반 업무 등
302	전문경력관나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관리계획 심사 및 주민고지 시스템 구축 운영 · 위해관리계획 심사에 따른 민원 전산화 일반 업무 등
401	공업연구사(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외훈련시설 활용 훈련 운영 및 화학설비 관리 · 화학설비 안전관리 및 응급조치 업무
402	공업연구사(화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검증, 공개 및 제도개선 등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제도 이행 관련 업무
403	공업연구사(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기준 현장 적용성 연구 등 · 관리기준 및 사고예방제도(장외, 위해) 이행평가 등
404	공업연구사(화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최적화 연구 등 ·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 기준 관리 등
501	환경연구사(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사고·테러 영향조사 업무 ·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위해성평가 등
502	환경연구사(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심의제도 운영 등
601	환경연구사(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사고 현장 출동 및 초동대응 · 사고현장 및 주변지역 사고물질 탐지·분석

3. 응시 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2020.7.1. 예정)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1.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단,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방호서기) 18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전문경력관나군) 20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연구사) 20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나. 응시자격요건(세부내용은 붙임의 직무기술서 참조)

○ 직급별 응시자격 요건(응시자격요건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할 경우 응시 가능)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응시자격요건
101	방호서기	· '가.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자 외 별도요건 없음
201	전문경력관 나군	·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기능장 : 전기 - 기사(3년 이상) : 전기, 전기공사 - 산업기사(6년 이상) : 전기, 전기공사 ※ 해당 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 이상의 관련분야 근무 경력 필요
202	전문경력관 나군	·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기능장 : 에너지관리 - 기사(3년 이상) : 에너지관리 - 산업기사(6년 이상) : 에너지관리 ※ 해당 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 이상의 관련분야 근무 경력 필요
301	전문경력관 나군	· 채용 예정 직무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채용 예정 직무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 예정 직무분야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 전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등
302	전문경력관 나군	· 채용 예정 직무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채용 예정 직무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 예정 직무분야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 전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등
401	공업연구사 (기계)	· 채용 예정 직무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직무분야 : 기계공학, 안전공학, 기계설계학, 정밀기계공학, 제어계측공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등
402	공업연구사 (화공)	· 채용 예정 직무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직무분야 : 화학공학, 공업화학, 환경공학, 화학, 농화학, 안전공학 등
403	공업연구사 (화학)	· 채용 예정 직무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직무분야 :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환경공학, 안전공학 등
404	공업연구사 (화공)	· 채용 예정 직무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직무분야 :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환경공학 등
501	환경연구사 (환경)	· 채용 예정 직무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직무분야 : 환경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환경보건학 등
502	환경연구사 (환경)	· 채용 예정 직무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직무분야 : 환경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환경보건학 등
601	환경연구사 (환경)	· 채용 예정 직무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직무분야 : 환경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환경보건학 등

※ 상기 기재된 임용 예정직급에 대한 상위직급 응시자격요건(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채용 관련 법령상)을 충족한 사람은 해당 임용예정직급의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공통사항**

- 응시자격요건(학위, 자격증 등)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학위기준, 자격증 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일하여 응시
-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 예정일(2020.7.1. 예정.) 기준으로 판단
-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에 기재된 우대요건,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직무기술서에 제시된 직무분야의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전에 한하여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을 유의)
※ 경력증명서 발급 확인자의 성명 및 서명 기재(연락처 포함)
-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 **학위**의 범위

- '학위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라도, 취득 후 경력기간을 요건으로 설정된 경우 위의 '경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력만 인정됨

○ **우대요건**

-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연차별 차등우대)**
※ 경력증명서에 의해 해당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 평가(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직무분야와 관련된 논문 실적(학위논문 제외, 건별 차등우대 / 연구사만 해당)**
※ 응시자격 충족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최근 5년 이내(2015. 1. 1. 이후)]에 한함(KCI 등재 후보지는 해당 없음)
- **영어 우수자(연구사만 해당)**

구분	TOEFL		TOEIC	TEPS	G-TELP (LEVEL 2)	FLEX
	PBT	IBT				
기준점수	530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340)점 이상	65점 이상	625점 이상

※ 검정기관별 유효기간 내 성적에 한하며, TEPS의 기준점수는 개정('18.5.12.) 이전 625점 이상, 개정('18.5.12.) 이후 340점 이상

-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붙임2 및 붙임3 참고)

○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소지시, 만점의 3%를 가산점으로 부여(1·2급 간 가산점수 차등은 없음)
- ※ 2016.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4.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전문경력관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 서류전형기준

- ① 자기소개서
- ② 직무수행계획서
- ③ 우대요건 : 직무기술서 참고
 - ※ 연구사에 한하여 전공적합도 별도 평가(연구논문 및 전공학문의 관련분야 연관성, 담당 예정업무간의 적합성, 연구논문 난이도 등을 종합 평가)
- ④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급 이상 소지시 만점의 3% 부여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 참고)

※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인정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 직무적합도는 면접 당일 작성한 자료의 발표, 질의 및 응답으로 평가하고, 공직자의 자세 등은 현장에서 주어진 문제의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 일정

- 원서접수 : 2020. 5. 6.(수) ~ 5. 8.(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예정) : 2020. 6. 23.(화)
- 면접시험일(예정) : 2020. 7. 1.(수)
 -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 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일(예정) : 2020. 8. 3.(월)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일시 및 시간: 2020. 5. 6.(수) 9:00 ~ 5. 8.(금) 18:00

※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됨

○ 접수방법: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접수

○ 내용: 이력사항 등록 및 추가서류 첨부 제출

- 이력사항 등록: 경력, 학위, 자격증, 어학성적 등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
- 추가서류* 첨부: [붙임]의 제출서류 작성양식 및 증빙서류를 PDF파일로 전환하여 첨부
- * 이력사항 등록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학위증명서, 경력, 연구실적, 자격증 등 기본서류 첨부(용량 10MB 이내)

○ 기타: 응시수수료(방호서기 5,000원, 전문경력관나군·연구사 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소요

※ 응시원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까지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함.
(원서접수 취소기간: 2020.5.6.~5.11. 09:00~18:00)

○ 응시표 출력: 2020. 6. 23.(화) 09:00부터 응시표 출력 가능

- 응시표 출력방법: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 면접시험 당일에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신분증* 소지 필수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 ※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 제출서류 목록 및 작성 요령

※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응시원서 접수시 작성 서식파일은 [응시코드번호_응시자이름.hwp]로, 증빙서류는 PDF파일로 스캔 또는 전환하여 파일명 [응시코드번호_응시자이름.pdf]로 첨부

구분	내용
1. 제출서류 총괄표	○ <서식1>
2. 이력서	○ <서식2> ※ 본인이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3. 자기소개서 1부	○ A4 2매 이내로 작성<서식3>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 A4 6매(요약서 1매 포함)로 작성<서식4>
5. 학위증명서 사본 및 학위 논문 사본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 학위논문요약서 1부 <서식5> ○ 학위논문 사본 1부 ○ 해외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필요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인 면접일에 지참 가능 ○ 심사위원 제척기피, 용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심사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구분	내용																
<p>6. 관련분야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연차별 차등 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주요경력 요약서 1부 <서식6> ○ 근무기간(연·월·일),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 및 '폐업 사실증명서'로 같음하되,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p>7.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기술서상 우대조건에 기재된 자격증에 한함 - 단, 연구사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7에 따른 가산대상 자격증에 한함 																
<p>8. 관련분야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건별 차등 우대(학위논문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자에 한함 ○ 연구논문 요약서 1부 <서식7> ○ 증명 서류로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첫장 사본 1부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최근 5년 이내(2015. 1. 1. 이후)]에 한함(KCI 등재 후 보지는 해당 없음) 																
<p>9. 어학능력 증빙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기관별 유효 기간 내 성적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1가지 이상 만족 시 인정) <table border="1" data-bbox="651 1507 1409 1637">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TOEFL</th> <th rowspan="2">TOEIC</th> <th rowspan="2">TEPS</th> <th rowspan="2">G-TELP (LEVEL 2)</th> <th rowspan="2">FLEX</th> </tr> <tr> <th>PBT</th> <th>IBT</th> </tr> </thead> <tbody> <tr> <td>기준점수</td> <td>530점 이상</td> <td>71점 이상</td> <td>700점 이상</td> <td>625(340)점 이상</td> <td>65점 이상</td> <td>625점 이상</td> </tr> </tbody> </table> <p>※ TEPS의 기준점수는 개정('18.5.12.) 이전 625점 이상, 개정('18.5.12.) 이후 340점 이상</p>	구분	TOEFL		TOEIC	TEPS	G-TELP (LEVEL 2)	FLEX	PBT	IBT	기준점수	530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340)점 이상	65점 이상	625점 이상
구분	TOEFL		TOEIC	TEPS					G-TELP (LEVEL 2)	FLEX							
	PBT	IBT															
기준점수	530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340)점 이상	65점 이상	625점 이상											
<p>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급 이상 소지자의 경우 만점의 3%를 가산점으로 부여(1·2급 간 가산점수 차등은 없음)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16.1.1. 이후 실시한 시험에 한함 																
<p>11. 주민등록 초본 1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만 제출(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구분	내용
1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자필서명 필수 <서식8>
13.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 자필서명 필수 <서식9>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관련 전공 학위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른 직무분야 또는 직렬(류)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나, 응시원서 제출기간 중에는 응시분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어학능력 등에 대해서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1종에 대한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8. 기타 참고사항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 방호서기 및 전문경력관나군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연구사의 경우 동 규정 [별표17]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각각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 호봉 책정 유의사항

- 채용전 경력이 없는 경우, 응시계급의 1호봉으로 책정
- 채용전 경력이 있는 경우, 본 채용시험에서 인정되는 경력과 호봉책정시 인정되는 '유사 경력'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시 해당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에 따라,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으며, 전문경력관나군의 경우에는 「전문경력관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전보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 연락처> 화학물질안전원 기획운영과 042) 605-7016, 7707